

부산가톨릭대학교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절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개정 2016.6.2.>

- 제1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가톨릭정신을 바탕으로 한 진리, 사랑, 봉사라는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문과 인격을 겸비한 지성인,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지도자, 인류복지에 기여할 세계인을 지향하는 한 사람의 참된 봉사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6.6.2.>
- ② 본 대학교는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사고와 융·복합능력의 고취, 올바른 인성에 기반을 둔 서번트 리더십 함양, 인류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신설 2016.6.2., 개정 2018.3.1., 2019.9.1.>
- [제목개정 2016.6.2.]

제 2 장 조 직

제 1 절 교육조직

- 제2조(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양대학, 자율전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5.9.1., 2018.3.30., 2019.8.1., 2024.3.1., 2024.4.26.>
- ② 본 대학교 각 대학에는 학부나 학과(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를 두며, 교양대학에는 인성교양학부를 둔다.<개정 2019.8.1.,2025.6.23>
- ③ 본 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며, 각 대학원의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 2022.10.1.>
1. 일반대학원: 대학원 <신설 2022.10.1.>
 2. 특수대학원: 미래복지상담대학원 <신설 2022.10.1.>
- 제3조(학위과정)** ① 본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본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개정 2015.3.1., 2018.3.1., 2022.10.1., 2023.5.15.,2026.9.1>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온라인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가. 통합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4.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비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24.9.1.>

제3조의2(박사과정 설치 기준)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설치 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인문·사회계열 3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4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

제4조(학위과정별 입학정원) ① 학사과정의 각 학과 등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3.1.>

② 각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각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2.8., 2015.3.1., 2018.3.1., 2022.10.1.>

제5조(별도 정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경우 그 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1.>

1. 대학: 위탁학생,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학사편입학생,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이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학생 <개정 2019. 9.1.>
2.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위탁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개정 2013.6.13., 2018.3.1., 2019.3.1., 2019.9.1., 2022.10.1.>

제6조(계약학과 등) ①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 등과 산업체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1.>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 기준과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 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제 2 절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등

제7조(부속시설) ① 본 대학교에 부속시설로서 중앙도서관, 정보전산원, 교수학습개발센터, 대학생활공감원, 진로취창업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신문사, 방송국, 학생생활교육관, 예비군대대, 성서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3.2.8, 2014.9.1, 2015.9.1, 2016.3.1, 2016.6.2, 2016.9.1., 2021.3.1., 2022.3.1., 2023.9.15., 2026.3.1>

②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부설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6.3.1., 2016.9.1., 2017.9.1., 2019.9.1.>

② 본 대학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서 병원경영컨설팅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보건과학연구소, 응용과학연구소, 경영사회복지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신앙과삶연구소, 대학중점융합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3.1., 2022.3.1.>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산학협력단

- 제9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의 명칭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한다.
-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절 직 제

- 제10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5 절 교 수 회

- 제11조(조직)** 본 대학교는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를 두되, 총장이 그 의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기타 교직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2조(소집과 심의사항)** ① 교수회는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소집한다. 다만,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신분에 관한 사항
 4. 대학평의원회 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
 5.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신설 2018.3.1.>

제 6 절 교무위원회

- 제13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8., 2014.9.1., 2017.9.1., 2018.3.1., 2019.3.1., 2019.8.1., 2020.3.1., 2022.3.1., 2022.9.1., 2023.3.1., 2023.9.15.>
- ②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대학원,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전형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장학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8.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7 절 대학원위원회

제14조(대학원위원회) 각 대학원의 효율적인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

- ① <삭제 2022.10.1.>
- ② <삭제 2022.10.1.>
- ③ <삭제 2022.10.1.>

제15조(기능) <삭제 2022.10.1.>

제16조(대학원위원회 회의) ① 각 대학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 2022.10.1.>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절 제위원회

제17조(제 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대학평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 ② 평의원 위촉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에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5.]

제 3 장 학사운영

제 1 절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9조(학년도 및 학기) ① 본 대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② 각 대학 및 대학원의 학사과정 운영 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절학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1., 2022.10.1.>

제20조(수업일수) ① 각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고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9.11.>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의거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1., 2019.9.1.>

③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45조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과과정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7.9.1.>

제21조(휴업일) ① 본 대학교의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이 휴일에도 수업을 과할 수 있다.

1. 여름방학 <개정 2017.3.1.>
2. 겨울방학 <개정 2017.3.1.>
3. 일요일
4. 국경 공휴일
5. 개교 기념일(10월 7일) <개정 2017.3.1.>
6. 대체공휴일 <신설 2023.3.1.>

② 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22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 2020.3.1., 2022.10.1.>

1. 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2.10.1., 2023.5.15.>

가. 석사과정: 2년

나. 박사과정: 2년

다. 통합과정: 4년 <신설 2023.5.15.>

2. 특수대학원: 2년 6개월 <개정 2022.10.1.>

제23조(학사과정의 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편입학생과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19.9.1.>

② 총장은 장애학생이나 재학연한 초과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③ 위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재학연한내에 본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한다. 이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9.1.>

제24조(대학원의 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

1. 대학원: 학위과정별 재학연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22.10.1., 2023.5.15.>

가. 석사과정: 4년

나. 박사과정: 6년

다. 통합과정: 7년 <신설 2023.5.15.>

2. 특수대학원: 5년 <신설 2022.10.1.>

② 총장은 장애학생이나 재학연한 초과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1.>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조기졸업 및 수업연한 단축) ①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제6학기 또는 제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며, 학기당 성적 평점 평균이 4.00 이상, 전 과정 성적 평점 평균이 4.30 이상이면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 단, 학·석사연계 과정 신청자는 전 과정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일 경우 조기졸업할 수 있다.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1., 2019.9.1., 2022.9.1.>

②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자나 학점의 조기취득, 학문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1., 2019.9.1., 2022.10.1., 2023.5.15.>

제 3 절 입학(편입학, 재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개정 2017.3.1.>

제26조(입학시기) 본 대학교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1.>

제27조(입학자격) ① 각 대학 학사과정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3.30.>

1. 고등학교 졸업자 <개정 2017.3.1.>

2. 삭제 <2017.3.1.>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대학원 석사 및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7.3.1., 2019.9.1., 2023.5.15.>

③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5.3.1., 2017.3.1., 2019.9.1.>

④ 삭제 <2012.1.4.>

제27조의2(입학제한) 본 대학교(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본교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업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학기간 중 휴직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2026.3.1.>

제28조(학사과정의 편입학) ① 학사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19.9.1., 2023.12.1.>

② 3년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간 교육과정에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편입학 과정을 두며 야간 교육과정에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학사학위 특별과정을 둔다.

③ 편입학 학년 및 모집인원은 교육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산출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1.>

④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⑤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1., 2020.3.1.>

제29조(학사과정의 재입학) ① 재입학은 총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9.>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징계 제적자
2. 이중 학적자
3. 삭제 <2012.11.26.>
4. 재학연한 초과 제적자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대학원 편입학 및 재입학)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이나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 2019.9.1., 2023.5.15.>

② 편입학과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1., 2019.9.1.>

제31조(학사과정 입학 구비서류 및 입학전형료) ① 학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정 날짜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9.9.1.>

1. 졸업(수료)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모집요강에서 지정하는 서류 <개정 2016.9.1., 2019.9.1.>

② 삭제 <2016.9.1.>

③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입학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입학전형료를 면제 혹은 감액하거나 입학전형료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19.9.1.>

[제목개정 2016.9.1.]

제32조(학사과정 신입생 선발) 학사과정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9.9.1., 2020.3.31.>

1. 학사과정의 신입생 선발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고사와 그 밖에 전형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 입학전형의 개발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호 이동 2020.3.31.>
3. 본 대학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호 이동 2020.3.31.>

4. 제3호의 위원회는 총장의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호 이동 2020.3.31.>
5.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호 이동 2020.3.31.>

제33조(대학원 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 2023.5.15.>

②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고사, 면접심사로 한다. <개정 2019.9.1., 2022.10.1., 2023.5.15.>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34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6.9.1., 2017.3.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이나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19.9.1.>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되거나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정 2020.3.31.>
3. 면접평가 시 대리 참여,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개정 2020.3.31.>
4.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공정한 전형 운영을 방해한 경우 <신설 2020.3.31.>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개정 2019.9.1., 호 이동 2020.3.31.>

제35조(등록) ① 입학생, 재학생, 복학예정자는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수업료와 그밖에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19.9.1.>

② 삭제 <2017.3.1.>

③ 삭제 <2018.3.30.>

④ 납부한 등록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삭제 <2017.3.1.>

⑥ 삭제 <2019.3.1.>

제35조의2(수강신청) ① 입학생, 재학생, 복학예정자는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내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1.]

제 4 절 학적 관리

제36조(학사과정의 전과) ① 학사과정의 전과는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시작 전까지 소정의

기간 내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2017.9.1., 2024.4.26., 2026.3.1>

② 전입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전출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30%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정지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하다. <개정 2012.11.26., 2019.9.1., 2024.3.1., 2024.4.26.>

③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26., 2013.9.9, 2018.3.30., 2019.9.1., 2022.9.1., 2023.3.1.>

④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6.>

[제목개정 2012.11.26.]

제37조(대학원 전공변경)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전공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0.1., 2023.5.15.>

②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신·구 전공의 각 지도교수 승인서
3. 이수한 학점 및 성적표

제38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는 당해 학기 학교의 수업일수 16분의 12선 이내에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과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2017.9.1., 2019.9.1.>

② 총장은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휴학기간) ① 과정별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2.8, 개정 2015.3.1.>

1. 학사과정 6학기,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4학기, 통합과정 6학기,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5.>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출산, 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의 경우에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2.8, 개정 2015.3.1., 2017.9.1.>

1. 병역의무이행(복무기간)
2. 삭제 <2018.3.30.>
3. 창업(4개 학기 이내)
4. 임신·출산·육아(4개 학기 이내) <개정 2017.9.1.>
5. 삭제 <2017.9.1.>
6. 질병(4개 학기 이내) <신설 2017.9.1.>

제40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

③ 휴학생의 복학은 휴학당시의 학기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1., 2019.9.1.>

④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사유서를 갖추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제적) ① 학생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4주가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개정 2017.3.1.>

2. 삭제 <2017.3.1.>

3. 정당한 사유 없이 4주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 <개정 2017.3.1.>

4. 질병, 그 밖에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9.9.1.>

5. 삭제 <2017.3.1.>

6.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

7. 그 밖에 본 대학교의 소정의 주요 규칙을 크게 위반한 자 <개정 2019.9.1.>

8. 삭제 <2018.9.1.>

9.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② 총장은 제적된 자라도 정상에 따라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 절 교과과정과 이수

제43조(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의 구분) ①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은 교양교과과정, 전공교과과정, 그리고 일반선택교과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2.8.>

② 교양 교과과정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3.1.>

③ 삭제 <2013.2.8.>

④ 전공 교과과정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2.8., 17.3.1>

⑤ 일반선택교과과정은 교양교과과정과 전공교과과정 이외의 교과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 2016.3.1, 2019.3.1., 2019.9.1., 2020.3.1.>

⑥ 삭제 <2018.3.30.>

제44조(교과과정 편성 및 이수) ①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은 본 대학교의 이상, 이념, 교육목표와 인재상 등을 달성하고 사회의 요구와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능률적인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교과과정 편성과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

② 대학원의 교과이수는 학과, 전공별로 교과과정표에 정한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과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③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교과과정표에 정한 이외의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45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3.1., 2020.9.4.>

② 현장실습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단,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총장은 이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4.>

제46조(자율전공학부의 전공배정) ① 학사과정의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공을 결정한다. <개정 2023.12.1.>

②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

제47조(학사과정의 부전공, 복수전공 등의 이수) ① 재학 중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생의 주전공 이외에 타 학과(전공)로의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공유전공과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1., 2019.3.1., 2019.9.1., 2020.3.1.>

② 삭제 <2020.3.1.>

③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공유전공과 마이크로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 2016.3.1., 2017.9.1., 2019.3.1., 2019.9.1., 2020.3.1.>

④ 삭제 <2017.9.1.>

[제목개정 2019.3.1.]

제47조의2(학·석사연계과정의 이수) ① 대학의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1.>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정원,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그 밖에 학·석사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

제48조(학점인정) ① 학사과정의 학업성적은 D° 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대학원 과정의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③ 재학 중 국내·외의 타 대학 또는 가상대학, 군복무 중 군 교육훈련시설 또는 대학 온라인 강좌에서 이수한 교과목, 재적기간 중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그 학점을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 2019.3.1.>

④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대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나 대학교가 연계한 학점인정 협약에 의해 각 대학교의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본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

⑤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과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 2019.9.1.>

⑥ 재입학자의 제적 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9.1.>

⑦ 본교 입학 전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내에서 학점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1.>

제49조(학점취소)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사과정의 매학기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7.9.1., 2019.3.1., 2024.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학기당 2학점까지, 학·석사연계과정을 신청한 학생은 학기당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다전공을 신청한 자는 신청한 다전공에 한하여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1., 개정 2018.9.1., 2019.3.1., 2023.3.1., 2024.3.1., 2026.3.1>

③ 학기당 수강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3.1.>

[제목개정 2019.3.1.]

제51조 삭제 <2017.9.1.>

제52조(대학원 과정의 학점인정)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일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6.09.01.>

① 삭제 <2026.9.1.>

② 삭제 <2026.9.1.>

③ 삭제 <2026.9.1.>

[제목개정 2026.9.1.]

제53조 삭제 <2026.9.1.>

제54조(강의시간표) 학사과정의 각 학과 등과 대학원의 학과의 강의시간표는 매 학기 개강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2019.9.1.>

[제목개정 2017.3.1.]

제 6 절 시험과 성적

제55조(학사과정의 시험시기) 학사과정의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정기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1.>

제56조(응시자격 및 결석의 허용) 학생이 해당 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수의 4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때, 총장이 허가하는 공인 결석 시간을 해당 교과목의 출석시간에 포함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2017.3.1>

[제목개정 2017.3.1.]

제56조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요청에 따

라 학습자료 제공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5.>

제57조(추가시험) 학생이 제56조의 응시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018.3.1., 2019.9.1.>

제58조(학업성적의 평가) ① 학사과정의 학업성적의 평가는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부여하며,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

②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단, 대학원 과정의 교과목별 학업성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 2024.3.1., 2025.6.23.>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	90 - 94	4.0
B ⁺	85 - 89	3.5
B [°]	80 - 84	3.0
C ⁺	75 - 79	2.5
C [°]	70 - 74	2.0
D ⁺	65 - 69	1.5
D [°]	60 - 64	1.0
F	0 - 59	0.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 또는 대학원과정의 연구학점 평가는 P(Pass), N(Non Pass)로 평가하되, 성적 평점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6.3.1.>

제59조(학사경고) 총장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학업성적이 열등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1., 2019.9.1.>

제 7 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60조(졸업 및 수료학점)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2.8., 2018.3.30., 2019.3.1.>

② <삭제 2025.6.23.>

③ <삭제 2025.6.23.>

④ 각 대학원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 2022.10.1.>

1. 대학원: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3.5.15., 2026.9.1.>

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전문간호사과정은 35학점 이상)

나.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다. 통합과정: 54학점 이상 <신설 2023.5.15.>

2. 특수대학원: 24학점 이상 <신설 2022.10.1.>

3. 각 대학원 석사과정의 추가 학점 이수 대체 수료학점은 30학점 이상(전문간호사과정은 41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연구 교과목의 학점은 제외한다. <신설 2022.10.1., 2025.6.23.>

⑤ 각 대학원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합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자의 경우 총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은 4.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1., 2023.5.15.>

제61조(졸업인증제 등 졸업요건) ① 학사과정의 경우, 제60조제1항의 졸업학점을 취득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10.8., 2017.3.1, 2019.9.1., 2020.3.1., 2022.9.1.>

1. 사회봉사활동 기준 충족
2. 비교과프로그램 이수

② 제1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각 대학, 각 학과에서는 필요에 따라 졸업논문, 졸업시험, 실습시간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4., 17.3.1>

③ 제1항의 각호와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4., 2015.3.1, 2017.3.1, 2020.3.1.>

④ 각 대학원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 및 일반대학원석사학위논문대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 2019.9.1., 2020.3.1., 2022.10.1.2025.6.23>

⑤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1., 2019.9.1. 2020.3.1., 2022.10.1., 2023.5.15., 2025.6.23.>

[제목개정 2017.3.1.]

제62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① 졸업에 필요한 전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3.1., 2019.9.1.>

② 졸업에 필요한 전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라도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증서를 교부한다.

제62조의2(복수학위) ① 국내·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8.]

제63조(석·박사과정의 학위수여) ①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 2 내지 별지 제1호의 4 서식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2.8., 2019.9.1., 2022.10.1., 2023.5.15.>

② 각 대학원의 학과별 수여학위명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2.8., 2022.10.1.>

③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64조(명예박사학위 수여) ①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수여하되, 별지 5호 내지 별지 5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9.1.>

③ 명예박사학위 후보자의 수여학위 종별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5조(수료시기) 본 대학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66조(수료증서 수여) 각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각각 별지 제4호의 2 와 별지

제4호의 3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2.8., 2019.9.1., 2022.10.1., 2023.5.15.>

제67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사유로 제63조의 학위를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훼손하여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1., 2019.9.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소할 때에는 총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8조(학사학위취득유예) ① 제62조의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19.9.1.>

② 학사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1., 2019.9.1.>

[제목개정 2019.9.1.]

제 8 절 대학원 학위논문

제69조(석·박사학위 논문의 지도)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선정된 지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 제출 등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논문지도 및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70조(석·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수여를 위하여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71조(석·박사학위 논문의 제출 및 대체)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외에 유형의 결과물로 된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각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9.1., 2022.10.1.>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72조(석·박사학위 논문 심사) ① 논문의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며 각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이 구술고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4., 2022.10.1., 2025.6.23., 2026.9.1>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3.>

제 4 장 특수학생 교육 등

제73조(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 학점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1.>

② 학점인정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며, 학점은행제의 운영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제74조(시간제등록생) ① 일반 사회인들에게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재교육이나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 시간제 등록생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9.1.>

② 선발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원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선발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학점에 따라 확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등록생의 신청학점은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75조(대학원 연구생) <삭제 2024.9.1.>

제76조(외국인 특별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3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원하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원 외의 특별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③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사과정은 제28조, 석사나 박사과정은 제30조의 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서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9.9.1., 2023.12.1.>

④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77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이나 전공에 관한 이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1.>

②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나 그 밖에 사항은 개강 시 마다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③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좌기간 중 수시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강자로서 규율을 어겼을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1.>

제 5 장 학 생

제 1 절 규율 및 상벌

제78조(학생본분) 학생은 따로 정하는 내규를 준수하여 성심성의껏 학업에 종사하고 도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이고 장래 지도자가 될 자격을 닦아야 한다. <개정 2019.9.1.>

제79조(집단활동) ①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학과행사, 단과대학·대학전체 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나 활동을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신설 2016.9.1., 2019.9.1.>

② 책임자로 지정된 학생과 담당교수는 집단활동 시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총장은 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설 2016.9.1.>

③ 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

중 단 등의 조치와 인권침해 행위자 및 집단활동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9.1.>

[제목개정 2016.9.1.]

제80조(표창)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와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9.1.>

제81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상태가 불량한 자
4. 기타 주요학칙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2 절 학생자치활동

제82조(목적) 학생들이 상호 유기적인 공동체 생활과 민주적인 자치활동의 자질과 소양을 강화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기구로서 본 대학교의 내에 부산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총학생회” 라 한다)를 둔다.

제83조(회비) 총학생회의 구성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조직과 운영)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활동) 총학생회는 학술, 문예, 체육 등에 관한 자치활동과 학교와 주변의 각종 재난 시 방재와 지원활동을 비롯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활동을 한다. <개정 2019.9.1.>

제86조(소속) 모든 학생단체는 총학생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학생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지도 및 감독) ① 총학생회는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② 학생지도장학위원회는 매 학년 초에 학생지도 계획을 세우고 지도교수를 두어 업무를 분담케 하며, 학칙 위반자에 대한 특별 지도와 개별상담을 통하여, 제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제87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이 학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11.]

제88조(금지사항)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활동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수업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89조(승인사항)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1호의 집회에 있어서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을 명시하고 담당지도 교수를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학교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90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개인의 모든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위원(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① 이 학칙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본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타교 제적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92조(활동중지)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제 3 절 장 학

제93조(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9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3.1.>

② 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자체평가

제95조(자체평가) ①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분석·평정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9.1.>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

제 8 장 학칙개정 및 보칙

제96조(학칙 개정절차) ① 각 부서장은 학칙의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개정안을 입안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② 교무처장은 개정안을 검토한 후 개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5일 이상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6.9.1>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학칙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공포한다. <개정

2016.9.1>

④ 삭제 <2012.5.16>

제97조(시행세칙) <삭제 2011.4.11>

제 9 장 교육인증

제98조(교육인증) 본대학교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단과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간호교육인증평가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 [본조신설 2020.7.20.]

부칙 (2010.10.2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당시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가 수료 및 학위취득 시까지는 종전의 “대학원학칙”을 적용한다. 이 학칙 시행 당시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기수료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3조(졸업학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1.5. 공포)

변경된 이 학칙 본문 제18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학부 및 유통경영정보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경영학부 및 경영학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유통경영정보학부 유통경영학전공 및 경영정보학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명칭이 변경된 유통경영학과 및 경영정보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 전에 유통경영정보학부에 소속된 재적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이 배정된 경우에는 배정된 전공에 일치하는, 변경된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소속되며, 전

공이 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학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년도 학부 전공에서 일치하는 변경된 학과로 배정된다.

1. 유통경영정보학부 유통경영학전공을 유통경영학과로,
2. 유통경영정보학부 경영정보학전공을 경영정보학과로

제3조(사회복지학부의 명칭변경, 전공폐지,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학전공에 기배정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학과에 배정한다.
- ② 2012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2014학년도 졸업시까지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동 전공 재적생이 학적 변동 후 폐지된 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상담학과에 배정한다. 이 학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행정전공에 기배정된 재적생도 같다.
- ③ 이 학칙 시행 전에 사회복지학부에 소속된 재적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이 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학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상담학과에 배정한다.

부칙 (2012.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졸업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의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2.5.16.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7.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의 변경된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6.1부로 폐지된 간호대학원(한방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보건과학대학원(정형물리치료학전공, 신경물리치료학전공, 방사선학전공, 병원경영학전공)의 재적생은 이 부칙 개정과 동시에 생명과학대학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폐지된 각 대학원의 동 재적생으로서 2011학년도 생명과학대학원 학위취득자도 이 변경된 부칙에 의거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1.2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사경고 재 제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2항의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청각치료학과 석사과정 수여학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2항의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6.13.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관리학과 및 멀티미디어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노인요양관리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노인복지보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멀티미디어공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소프트웨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2013.9.9.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8.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23.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3.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5.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복합전공 시행에 따른 연계전공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7조의 개정학칙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전에 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6.6.2.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0.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결석 시간의 출석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56조의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인증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7년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9.1. 공포, 삭제 2020.9.4.)

부칙 (2018.3.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학대학 신학과 및 일반대학원 신학과 폐지에 대한 조치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신학대학 신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신학대학 신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신학대학 신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 3 조(대학원 신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대학원 신학과의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2018.9.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보건학과의 단과대학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개정 학칙 시행 전에 응용과학대학 산업보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보건과학대학 산업보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산업보건학과의 보건과학대학으로 소속 변경 적용시기) 산업보건학과의 보건과학대학으로 소속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25.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30.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8.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31.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20.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4.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 특별운영에 대한 경과 조치) 제4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1.3.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공학과, 환경행정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2학년도부터 폐지되는 환경공학과, 환경행정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2029학년도 졸업시까지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학과 폐지 및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22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2024학년도 졸업시까지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동 학과 재적생이 학적 변동 후 폐지된 학년에 복학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배정된다.

1. 응용과학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응용과학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로
2.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학과는 응용과학대학 컴퓨터정보공학과로
3. 사회과학대학 경영정보학과는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로

제4조(산업보건학과, 유통경영학과 및 사회복지상담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산업보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안전보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유통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유통마케팅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전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2022.2.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1.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일반대학원 환경산업보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 안전보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2.4.15.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정원 모집유보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에 따라 모집유보를 시행하는 노인복지보건학과 10명, 컴퓨터정보공학과 5명, 경영학과 10명,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3명의 입학정원은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만 적용하며, 2026학년도부터 복원하여 시행한다.

부칙(2022.9.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요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3호의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2.10.01.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및 신학과 폐지에 대한 조치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및 신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및 신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3.03.01. 공포)

제1조(시행일) ①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24학년부터 노인복지보건학과와 경영학과 신입학 및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편입학 모집단위는 폐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노인복지보건학과 모집유보 입학정원 10명, 경영학과 모집유보 입학정원 10명은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신입학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노인복지보건학과와 경영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2031학년도 졸업 시까지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편입학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재적생은 2026학년도 졸업 시까지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23.05.15.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9.15.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시설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시행된 인사발령 사항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12.1.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보건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4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보건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박사과정 설치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개정학칙은 2024학년도에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사과정의 편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 제1항 및 3항의 개정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4.3.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26.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안전보건학과에 소속된 재

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산업안전보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5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2032학년도 졸업시까지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소속 재적생이 학적 변동 후 복학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상담심리학과는 재적 학년이 있어야 한다.

③ 폐지된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모집유보 입학정원은 상담심리학과와 모집유보 입학정원으로 본다.

부칙(2024. 9. 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3.01.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청정시스템공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일반대학원 청정시스템공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일반대학원 사회안전시스템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5. 4. 25.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6. 23.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 3. 1. 공포)

제1조(시행일)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6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에 소속된 재적생(수료생 포함)은 2030학년도 졸업시까지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6.9.1. 공포)

변경된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9.8, 2012.11.26, 2013.6.13, 2014.9.23, 2015.11.25, 2016.9.1, 2018.3.1., 2018.3.30., 2019.3.1., 2019.3.29., 2020.3.1., 2020.3.31., 2021.3.1., 2021.5.6., 2021.7.23., 2022.3.1., 2022.4.15., 2023.3.1., 2023.5.15., 2024.4.26., 2024.9.1., 2025.4.25., 2026.9.1>

학사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

단과 대학	계열	모집단위명	2028 학년도	편제정원				
				2027 학년도	2026 학년도	2025 학년도	2024 학년도	합계*
간호 대학	자연과학	간호학과	125	125	125	125	115	490
		소계	125	125	125	125	115	490
보건 과학 대학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72	72	72	72	67	283
		물리치료학과	60	60	60	60	60	240
		방사선학과	80	80	80	80	80	320
		치기공학과	80	80	80	80	80	320
		병원경영학과	48	48	48	48	48	192
		언어청각치료학과	45	45	45	45	45	180
		안전보건학과	—	—	—	—	25	25
		산업안전보건학과	20	20	20	20	—	60
		소계	405	405	405	405	405	1620
응용 과학 대학	공학	소방방재학과	40	40	40	40	40	160
		컴퓨터정보공학과	20(5)	20(5)	20(5)	20(5)	25(5)	105
		소계	60(5)	60(5)	60(5)	60(5)	65(5)	265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	유통마케팅학과	25	25	25	25	25	100
		사회복지학과	35	35	35	35	40	145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	—	—	—	27(3)	30
		상담심리학과	27(3)	27(3)	27(3)	27(3)	—	90
		글로벌한국학부(정원외)	0	0	0	0	—	0
		미래설계융합학부(정원외)	0	0	0	0	—	0
		소계	87(3)	87(3)	87(3)	87(3)	92(3)	365
—	자연과학	자율전공학부	20	20	20	20	20	80
합계			697(8)	697(8)	697(8)	697(8)	697(8)	2820

※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정원

* 유보인원 포함 합계

- 임상병리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24명 (야간)
- 물리치료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24명 (야간)
- 방사선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24명 (야간)
- 치기공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24명 (야간)
- 병원경영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24명 (야간)

[별표 1의2] <개정 2012.1.4., 2013.2.8., 2013.10.8., 2015.3.1., 2016.3.1., 2016.9.1., 2018.3.1., 2018.3.30., 2019.3.1., 2021.3.1., 2021.5.6., 2021.3.1., 2022.3.1., 2022.10.1., 2023.3.1., 2023.5.15., 2023.12.1., 2024.9.1., 2025.3.1., 2025.9.1., 2026.3.1., 2026.9.1>

<2027학년도>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인문사회 (3학과)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26	인문사회 (1학과)	마케팅비즈니스학과	20
	상담심리학과			—	
	신학과			—	
자연과학 (8학과)	간호학과		자연과학 (6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	
	안전보건학과			—	
공 학 (2학과)	사회안전시스템학과		공 학 (1학과)	사회안전시스템학과	
	컴퓨터공학과			—	
학과간 협동과정 (2학과)	과학수사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1학과)	과학수사학과	
	중독학과			—	
합계(15학과)		126	합계(9학과)		20

2. 미래복지상당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인문사회 (4학과)	미래복지학과	20
	상담심리학과	
	중독학과	
	신학과	
합계(4학과)		20

<2026학년도>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인문사회 (2학과)	글로벌유통비즈니스학과 (온라인학위과정)	10	인문사회 (1학과)	-	20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16		마케팅비즈니스학과	
자연과학 (9학과)	간호학과		자연과학 (7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	
	안전보건학과			-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공 학 (2학과)	사회안전시스템학과		공 학 (1학과)	사회안전시스템학과	
	컴퓨터공학과	-			
합계(3계열 13학과)		126	합계(3계열 9학과)		20

2. 미래복지상담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인문사회 (4학과)	미래복지학과	20
	상담심리학과	
	중독학과	
	신학과	
합계(1계열 4학과)		20

<2025학년도>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인문사회 (2학과)	글로벌유통비즈니스학과 (온라인학위과정)	10	인문사회 (1학과)	-	20
	마케팅비즈니스학과	116		마케팅비즈니스학과	
자연과학 (9학과)	간호학과		자연과학 (7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병원경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	
	안전보건학과			-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과	
공 학 (2학과)	사회안전시스템학과		공 학 (2학과)	사회안전시스템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합계(3계열 13학과)		126	합계(3계열 10학과)		20

2. 미래복지상담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계열	학 과 명	입학정원(명)
인문사회 (4학과)	미래복지학과	20
	상담심리학과	
	중독학과	
	신학과	
합계(1계열 4학과)		20

[별표 2] 학사과정 수여 학위 <개정 2011.9.8., 2013.6.13., 2015.3.1., 2016.3.1., 2017.3.1., 2017.9.1., 2019.3.1., 2019.9.1., 2020.3.1., 2020.7.20., 2020.9.4., 2021.3.1., 2021.5.6., 2022.10.1., 2024.4.26., 2024.9.1. 2026.3.1.>

학위종별	학과(전공)	비고
간호학사	간호학과	
노인복지보건학사	노인복지보건학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병원경영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안전보건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병원경영학과(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이학사	환경행정학과	
공학사	환경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유통마케팅학과, 경영정보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사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글로벌한국학부, 미래설계융합학부	
이학사	과학수사전공, 미래사회안전망확보전공, 의료기기규제과학전공, 디지털의과학전공	융합전공
공학사	원자력안전관리전공, 미디어콘텐츠전공, 바이오헬스데이터사이언스전공, 데이터유통안전관리전공, e스포츠산업전공	
해양미래산업공학사	해양미래산업전공	
창업학사	앙트러프리너십전공	
글로벌컬치매관리보건학사	글로벌컬치매관리보건전공	
보건복지학사	커뮤니티헬스케어전공	
체육학사	운동건강관리전공	
복지상담융합학사	지역사회현안해결전공	

[별표 2의2]

1. 일반대학원 학과별 수여학위명 <개정 2021.3.1., 2022.3.1., 2022.10.1., 2023.5.15., 2023.12.1., 2025.3.01., 2026.9.1>

계열	학 과	석사학위명	박사학위명
인문사회 계 열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마케팅비즈니스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글로벌유통비즈니스학과	경영학석사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
	신학과	신학석사	-
자연과학 계 열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노인복지보건학과	노인복지보건학석사	-
	임상병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치료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방사선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치기공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병원경영학과	보건학석사	보건학박사
	언어청각치료학과	이학석사	-
	안전보건학과	이학석사	-
공학계열	사회안전시스템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u>학과간</u>	<u>과학수사학과</u>	<u>이학석사</u>	<u>이학박사</u>
<u>협동과정</u>	<u>중독학과</u>	<u>중독학석사</u>	<u>-</u>

2. 미래복지상담대학원 학과별 수여학위명

계열	학 과	석사학위명
인문사회 계 열	미래복지학과	미래복지학석사(장기요양서비스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전공)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중독학과	중독학석사
	신학과	신학석사

[별표 3] 학사과정 모집 단위별 졸업학점 <신설 2019.3.1., 개정 2019.3.29., 2020.3.1., 2023.3.1. 2025.3.1>

단 과 대 학	계 열	모 집 단 위 명	2019 학년도 이후	2018 학년도 이전
간 호 대 학	자 연 과 학	간 호 학 과	130	135
		노 인 복 지 보 건 학 과	130	135
보 건 과 학 대 학	자 연 과 학	임 상 병 리 학 과	130	135
		물 리 치 료 학 과	130	135
		방 사 선 학 과	130	135
		치 기 공 학 과	130	135
		병 원 경 영 학 과	130	135
		언 어 청 각 치 료 학 과	130	135
		산 업 안 전 보 건 학 과	125	130
응 용 과 학 대 학	공 학	환 경 공 학 과	125	130
	자 연 과 학	환 경 행 정 학 과	125	130
	공 학	소 방 방 재 학 과	125	-
		컴 퓨 터 정 보 공 학 과	125	-
사 회 과 학 대 학	인 문 · 사 회	경 영 학 과	125	130
		유 통 마 케 팅 학 과	125	130
		사 회 복 지 학 과	125	130
		사 회 복 지 상 담 심 리 학 과	125	130
		상 담 심 리 학 과	125	-
		글 로 벌 한 국 학 부	125	-
		미 래 설 계 융 합 학 부	110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전 공: ○○○○학과(전공), ○○학사

부 전 공: ○○○○학과(전공), ○○학사

복수전공: ○○○○학과(전공), ○○학사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 대학장 (학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 부산가대○○○○ 학○○○○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박(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 학 박(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부산가대○○○○○ 박(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부산가대○○○○○ 석○○○○○

[별지 제1호의 4서식] <신설 2023.5.15.>

No.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 ○ ○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 ○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is ○ ○ day of ○ ○, two thousand and ○ ○

대학원장 서명

Dean of the Graduate School

총장 서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2호서식] (부전공) 삭제 <2019.9.1.>

[별지 제3호서식] (복수전공) 삭제 <2019.9.1.>

[별지 제3호의 2서식] (융복합전공) <개정 2015.9.1., 2016.3.1., 2018.8.1., 삭제 2019.9.1.>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 대학 ○○○○학부(과)

(○○○○전공) 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 대학장 (학위) ○ ○ ○ (직인)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 학 석(박)사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 제5호의 2서식] <신설 2024.9.1.>

No.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 ○ ○

the degree of

Honorary Doctor of Philosophy

in ○ ○ ○ ○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this ○ ○ day of ○ ○, two thousand and ○ ○

대학원장 서명

Dean of the Graduate School

총장 서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